

# 제210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 순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 보고자 : 김향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군정질문

● 질문자 : 형남현 의원

● 질문자 : 김향란 의원



거창군의의회

GEOCHANG COUNTY COUNCIL

2015. 5. 21(목) 10:00

제2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세입예산안 대비표 ..... 1
- 세출예산안 대비표 ..... 2
- 심 사 결 과 ..... 2
- 세입예산안 수정내역 ..... 2
- 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3
- 세출예산안 변동조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5. 12. (거창군수)
- 회 부 일 자 : 2015. 5. 12.
- 상정 및 의결 일자 : 2015. 5. 20(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세입예산안 대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b>일반+기타특별회계</b>	<b>441,511,012</b>	<b>411,746,683</b>	<b>29,764,329</b>	<b>7.23</b>
지 방 세 수 입	19,421,446	19,421,446	0	0.00
세 외 수 입	14,139,026	13,515,618	623,408	4.61
지 방 교 부 세	191,828,000	192,000,000	△ 172,000	△ 0.09
조 정 교 부 금 등	7,236,974	7,236,974	0	0
보 조 금	139,657,403	135,718,048	3,939,355	2.9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9,228,163	43,854,597	25,373,566	57.86
<b>공 기 업 특 별 회 계</b>	<b>20,345,964</b>	<b>20,000,084</b>	<b>345,880</b>	<b>1.73</b>

### 3. 세출예산안 대비표(일반+특별+공기업)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461,856,976	431,746,767	30,110,209	6.97
일반 회계	소 계	412,863,043	384,930,282	27,932,761	7.26
	의회운영위원회	915,324	915,324	0	0
	총무위원회	214,111,854	206,290,252	7,821,602	3.79
	산업건설위원회	197,835,865	177,724,706	20,111,159	11.3
기타특별회계		28,647,969	26,816,401	1,831,568	6.83
공기업특별회계		20,345,964	20,000,084	345,880	1.73

### 4. 심사 결과

####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8건에 1,781,500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5. 세입예산안 수정내역 : 해당 없음

## 6.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일반+특별+공기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증감액	승인액	비 고
계	461,856,976	△1,781,500	460,075,476	
<b>총 무 위 원 회</b>	214,848,185	△1,307,000	213,541,185	
기획감사실	20,680,645		20,680,645	
주민생활지원실	84,962,850		84,962,850	
행 정 과	58,615,384		58,615,384	
창조산업과	10,810,802	△1,302,000	9,508,802	
재 무 과	2,426,411		2,426,411	
민원봉사과	590,539		590,539	
문화관광과	10,725,218	△5,000	10,720,218	
보 건 소	8,474,290		8,474,290	
문 화 센 터	1,745,019		1,745,019	
체육청소년사업소	8,991,467		8,991,467	
읍 · 면	6,825,560		6,825,560	
<b>산업건설위원회</b>	225,747,503	△474,500	225,273,003	
안전총괄과	15,145,303	△37,000	15,108,303	
승강기경제과	10,456,949		10,456,949	
산림녹지과	25,284,263		25,284,263	
녹색환경과	17,863,156		17,863,156	
건설과	44,562,373		44,562,373	
도시건축과	22,124,438	△100,000	22,024,438	
농업기술센터	68,785,610	△337,500	68,448,110	
상하수도사업소	20,565,105		20,565,105	
거창사건사업소	960,306		960,306	
<b>의회운영위원회</b>	915,324		915,324	
의회사무과	915,324		915,324	
<b>공기업특별회계</b>	20,345,964		20,345,964	

## 7. 세출예산안 변동조서

###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비고
	정책	단위	세부						
창 조 산업과	교육지원	교육여건 개선	서민자녀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맞춤형 지원 사업	2,604,000	△1,302,000	1,302,000	군민공감대 미형성	
문 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행사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거창합창단 지원	5,000	△5,000	0	향후 지원검토	
안전 총괄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안전 시설확충	공용버스 구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공영버스구 입	388,000	△37,000	351,000	대형버스4대 구입을 대형버스 3대, 소형버스 1대 구입으로 조정	
도시 건축과	도시관리	자전거 활성화	군민공영 자전거 운영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군민자전거 스테이션추가 설치	220,000	△100,000	120,000	스테이션 4곳 추가설치를 2곳으로 조정	
농업기 술센터	농촌복지 증진	축산업 육성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	402-01 민간자본이전 ○애우거세장 려금	600,000	△100,000	500,000	한우분야 과도한 지원 축소	
				○애우 사료대	300,000	△100,000	200,000	"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97,500	△97,500	0	"	
				○유기한우 목책기 조성	40,000	△40,000	0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과 목			통계목(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해당 없음					

8.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승인액	조건부 승인내역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해당 없음				

9. 기타 주문사항 : 해당 없음

#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10:00 ~
- 질문의원 : 형남현의원
- 질문내용
  1.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2.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관련

#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5. 5. 21.(목) 10:00 ~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답변자	비고
형남현 의원	1.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승강기 경제과장	
	2.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관련	산림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10:00 ~

● 질문의원 : 형 남 현 의원

● 질문내용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1.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업체가 입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한 업체 현황과 생산(가동)현황은?
2.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3.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이며 각 회사별 지원 내역은?
4. 공장입지 부족난을 해소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이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5.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 계획과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6.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 외에 기타 제조 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 여부는?

답 변 자 : 승강기경제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1.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업체가 입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입주한 업체 현황과 생산(가동)현황은?
2.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3.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연도별 지원액은 얼마이며 각 회사별 지원 내역은?
4. 공장입지 부족난을 해소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이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5.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 계획과 분양에 따른 문제점은?
6.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 외에 기타 제조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 여부는?

## □ 답변요지

- ① 2010년 한국승강기대학이 개교할 당시에 거창승강기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조성중에 있는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선도기업 24개업체를 유치하게 되었음.  
- 24개기업 중 정상가동 20, 일부가동 3, 이전중 1개 기업이 있음
- ② '15년 4월 100%분양 완료됨.
- ③ 승강기 선도기업 22개 업체에 대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입지 보조금 13,358백만원, 시설·설비이자 700백만원, 물류지원 764백만원으로 총14,822백만원 지원 되었음

- ④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기업운영 환경이 취약한 실정 이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거창군 승강기밸리로서의 여건을 공고히하여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됨.
- ⑤ 분양대상면적은 40필지 193천㎡(58,383평)로서
- 승강기관련업체 분양면적 116천㎡(35,090평),
  - 기타제조업체 분양면적 77천㎡(23,293평)
  -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기업유치 유인책 마련
  - 민간사업시행자는 수도권 분양전문대행사를 선정 분양 추진
  -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류비용 증가, 고급기술 인력의 이주기피, 기업체 자금난 발생요인 증가가 예상됨
  - 물류비용 절감은 기존 선도기업체의 물류운송방식과 연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급기술인력의 이주기피현상은 송정택지 또는 일반산단 주거지원시설을 활용 지원 방안 모색
- ⑥ 교통수단, 생활기반여건 등이 취약하지만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100% 분양 가능하다고 판단 됨.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승강기경제과】

□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승강기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할 선도기업체가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된 이유와 입주한 업체현황과 생산(가동)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승강기대학 개교 및 R&D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선도기업체가 입주해 있어야 합니다. 당시 거창승강기 밸리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고

○ 승강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승강기관련업체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행정 절차이행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입주를 희망한 업체들을 거창으로 유치하고자 부득이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 승강기 업체는 24개 기업이 입주 계약체결하여, 20개 기업이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3개 기업은 공장건축과 함께 일부 가동중에 있고, 1개 기업은 승강기 포장업체로 이전중에 있습니다.

□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산업단지 공장용지 부지는 464천m<sup>2</sup>로 2015년 4월에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승강기 업체에 대해 현재까지 군에서 지원한 연도별 지원액과 각 회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도기업체 입주기업 중 22개 승강기 업체에게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입지보조금, 시설·설비이자, 물류지원으로 총 14,82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 세부지원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년도별로는

연도	합계(천원)	입지보조 (천원)	시설·설비이자 지원(천원)	물류지원(천원)	비고
합계	14,822,370	13,357,838	700,532	764,000	
2011	3,521,298	3,521,298	-	-	
2012	3,935,925	3,854,000	81,925	-	
2013	4,667,999	4,165,600	234,399	268,000	
2014	2,359,084	1,816,940	311,144	231,000	
2015	338,064	-	73,064	265,000	

○ 회사별로는

(단위 : 천 원)

연번	회 사 명	합계(천원)	입지보조	시설·설비 이자지원	비고
합계		14,058,370	13,357,838	700,532	
1	(주)모든엘리베이터	1,133,797	1,070,911	62,886	
2	누리엔지니어링(주)	846,151	801,846	44,305	
3	(주)스타리프트	337,440	287,437	50,003	
4	오양테크	1,585,148	1,585,148	-	
5	(주)대영ENG	546,645	546,645	-	
6	(주)스트롱플러스	615,899	562,808	53,091	
7	(주)엔이테크	303,029	279,680	23,349	
8	(주)남양이엔지	292,132	271,413	20,719	
9	(주)금보엘리베이터	302,857	273,314	29,543	
10	(주)코리아엘텍	704,262	650,465	53,797	
11	안승엘리베이터(주)	310,235	251,935	58,300	
12	경일ELS	295,568	270,446	25,122	
13	한국우시오(주)	273,339	273,339	-	
14	(주)메이저텍	300,531	273,157	27,374	
15	동천기업(주)	335,476	307,458	28,018	
16	(주)오코	1,591,006	1,572,591	18,415	
17	(주)오대양글로벌	409,971	409,971	-	
18	(주)금산산기	588,177	546,637	41,540	
19	제이앤드	508,986	467,157	41,829	
20	(주)서광	341,548	273,314	68,234	
21	(주)유원이엠티	465,599	411,592	54,007	
22	(주)동양메닉스	1,970,574	1,970,574	-	

□ 공장입지 부족난을 해소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사업목적이 군의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거창승강기밸리조성사업의 완성과 우량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승강기전문농공단지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 거창군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우리군에 있는 승강기 대학교와 승강기R&D센터, 승강기기업체가 집적화되어 있는 여건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공히 『세계 승강기 산업의 허브!』로서의 비전을 실현해 나아가자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현재 공정율은 35%정도이며, 2016년 6월경에 준공과 44개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후 분양계획과 분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양대상면적은 40필지 193천㎡(58,383평)로서 승강기 관련업체대상 분양면적은 116천㎡(35,090평), 기타제조업체 대상 분양면적은 77천㎡(23,293평)입니다.

- 거창일반산업단지에 선도기업으로 선입주한 승강기 산업 관련 업체의 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등을 통하여 승강기 관련업체를 적극유치하고
- 경상남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요청하여 투자 금액 20억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이 10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외 4개 항목에 최대 15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유치 유인책을 마련하며,
- 민간사업시행자는 조기분양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분양전문대행사를 선정하여 분양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리군은 타 군과 비교하여 교육도시, 생활여건,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우리군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분양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군이 대도시와 원거리에 있어 물류비용이 증가되는 등 지리적 여건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기업체 이전에 따른 고급기술 인력의 이주기피 현상과 기업체 자금난 발생 요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 그러나 우리군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물류비용은 승강기관련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선도기업체의 물류운송

방식과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급기술인력의 이주기피현상에 대해서는 송정택지내 또는 일반산단내 주거지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승강기 관련 업체외에 기타 제조업체를 40% 입주시킨다는 계획에서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의 지역적인 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지방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내륙 산간지역으로서 대전~통영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와 인접되어 있으나, 대도시로서의 생활기반여건 등이 취약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라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경상남도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의 기업유인책을 통하여 충분히 기타 제조업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10:00 ~
- 질문의원 : 형 남 현 의원
- 질문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관련
  1.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2.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3. 석재공인시험기관 지정 후 실적 및 총 수익금은?
  4. 기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5. 신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6. 사업초기에 비해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7. 연구센터의 자립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 변 자 : 산림녹지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관련

1.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2.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3. 석재공인시험분석기관 지정 후 실적 및 총수익금은 얼마인지?
4. 기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5. 신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6.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7. 자립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 □ 답변요지

### ①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 연구센터의 주요 업무인 석재분야 네트워크 활동, 기업지원, 품질지원, 홍보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

### ②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수익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익금	187,171	6,680	35,409	61,884	83,198

③ 석채공인시험기관 지정 후 실적 및 총 수익금은 얼마인지?

[시험성적서 발급 및 측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수료 계	127,195	58,097	52,818	16,280
공인시험성적서	129 건	24 건	84 건	21 건
일반시험성적서	42 건	3 건	14 건	25 건
가공 조경석 굴림도 측정	54개 업체	41개 업체	12개 업체	1개 업체
건설재료 품질시험용 시료성형	18개 업체	4개 업체	10개 업체	4개 업체

④ 기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 건축물의 고급화, 고품질 제품화 등의 기술집약형 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 및 신기술 제품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소극적임.

⑤ 신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 애로에 해당하는 기술 지원과 장비 활용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있음
- 전국대자율 분석, 급경사지안정성평가 등 많은 시간, 기술력과 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음

⑥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사업초기에 비해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 화강석은 광물이 아닌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비사업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주하기 어려웠으나, 지원 가능한 사업은 다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⑦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시험분석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자립화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 공인시험분석, 석재관련 학술용역, 신기술개발 성과의 수익창출, 새로운 이익 창출 사업 발굴을 통해 법인 운영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산림녹지과장】

□ 산림녹지과장 답변입니다.

○ 형남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설립 목적과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거창석재조합, 거창석산협회,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및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과 석재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면안정성평가, 가공기술개발, 지적재산권 확보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과 석재원산지 검증, 국제공인시험분석인정 기관 운영을 통한 품질지원 활동,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창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 둘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 2011년 6,680천원, 2012년 35,409천원, 2013년 61,884천원, 2014년 83,198천원 총 187,171천원의 수익활동을 하였습니다.
  
- 셋째, 석재공인시험 분석기관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실적 및 총수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 2013년 4월 23일에 석재공인시험 분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5년 4월까지 총 127,195천원의 경영수익이 있었습니다.
  
- 넷째, 기업지원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 건축물의 고급화, 고품질 제품화 등 건축산업의 변화에 맞춰 화강석 산업 부분도 변화가 있어야 하나, 관내 업체들은 기존 방식의 경계석, 판석 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집약형 산업, 신기술 제품의 현장 적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2세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기술·제품개발, 지적 재산권 확보 및 각종 인증제도 활용 등에 관심을 보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신기술과 장비를 개발해서 기업체에 제공하면 받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 연구센터는 군 출연기관으로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 애로에 해당하는 기술지원과 장비 개발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석 판별을 위한 전국대자율분석, 가공조경석 규격화를 위한 조경석 형상평가 기술개발, 사면 붕괴 방지를 위한 급경사 안정성평가 그리고 사면안정성평가 등 많은 시간, 기술력과 인력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여섯째, 사업초기에 비해 국책사업 수주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 2007년 화강석 특구로 지정된 이래 2차 신활력 사업, 1,2단계 지역연고산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5건의 지원 가능한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다만, 화강석은 광물이 아닌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비사업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비사업 등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비사업 수주를 통해 국비예산확보 및 기업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자립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 ▶ 연구센터는 최근 가공조경석, 판석, 경계석 단체표준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석재관련 업체 시험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연구센터 설립 목적 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외 민관 협치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로 도출할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 등 새로운 이익 창출사업 발굴을 통해 법인운영의 자립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화강석 연구 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군정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1.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2.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 질문 및 답변자

○ 일 시 : 2015. 5. 21.(목) 10:00 ~

질문 의원	질 문 내 용	답변자	비고
김향란 의원	1.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관련	창조산업 과장 농업기술 센터소장	
	2.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창조산업 과장 재무과장 도시건축 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10:00 ~
- 질문의원 : 김 향 란
- 질문내용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사항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

**답 변 자 : 창조산업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1. 관련 조례안을 4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
2. 사업의 배경과 추진현황 및 경과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견해
4. 읍면별 신청 접수결과에 대한 사항
5. 신청자 현황을 제1호 보고한 것에 대한 군의 입장
6. 서민자녀의 기준과 바우처 사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기존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근거에 관한 사항
8. 바우처카드 가맹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
10.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조례를 보류한데 대한 군의 입장

## □ 답변요지

- 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의 시기적 미이행으로 상정할 수 없었음
- ② 본 사업은 교육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있으며 현재 교육바우처사업만 시행하고 있음
- ③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 기대
- ④ 12개 읍면에서 총 2,558명이 신청
- ⑤ 경남도의 일정통보 공문에 의거 추진함 사항임
- ⑥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이하인 가정이며 12개 시군에서 바우처카드를 사용 중임
- ⑦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중복 없음'으로 통보됨
- ⑧ 온라인 가맹점, 관내 가맹점, 도내 가맹점이 현재 208개소로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
- ⑨ 수혜대상자와 비수혜대상자가 함께 참가하며 수혜대상자는 참가비를 군에서 지원함
- ⑩ 이 사업에 대해 군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관련)

1. 거창교정시설 사업 추진 시 입지분석 관련 사항
2.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 관련 군 조치 사항
3. 유치위·추진위 및 찬성 성명서 발표 관련 사항
4. 교정시설 견학 예산 관련 사항
5. 주민 간 고소·고발 등 갈등 관련 군의 입장
6. 2010년 이후 법조타운 관련 출장 내역
7.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 이전 추진 현황
8. 현 부지 외 타 부지 검토에 대한 군의 입장
9. 거창지원·지청과 15분 거리의 국유지·국유림 관련 사항
10. 법무부 교정시설 부지 선정 조건
11. 성산마을에 교정시설 조성 이유
12. 유치 서명부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군의 입장
13. 반대 서명 동참 군민 수에 대한 입장
14. 공사 발주 공고 일시 중단에 대한 입장
15.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16. 구치소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시정·이행 노력
17. 갈등조정위원회 등 대책위원회 구성 계획

## □ 답변요지

- ①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 당시 입지분석 시행
- ② 해당 부대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 우리군은 적극 협력 계획
- ③ 유치위·추진위 구성 및 찬성 성명 발표는 자발적인 것
- ④ 4회에 걸쳐 7.8백만원 지원, 그 외는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
- ⑤ 고소·고발 현황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사인 간의 분쟁은 관여할 사항 아님
- ⑥ 그간 9회에 걸쳐 관내·외 출장을 통해 공식 방문
- ⑦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 공사 절차 진행 중, 보호관찰소 이전 부지 협의 중
- ⑧ 성산마을 문제 해결 및 197억원 보상 완료 단계, 타 부지 검토 불가
- ⑨ 거창군 관내 132,000㎡ 이상 국유지는 총 86필지, 산림청·조달청에서 관리 중
- ⑩ 소관부처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선정
- ⑪ 지역 현안인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것
- ⑫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않음
- ⑬ 공식적으로 접수 확인된 바 없으며, 특정단체 서명활동 언급은 적절치 않음
- ⑭ 현재 법무부 일정 관계로 일시 보류중이며, 정상 추진할 예정
- ⑮ 여론조사 설계에 따라 결과 차이, 타 여론조사는 법조타운 찬성 군민이 다수
- ⑯ 관련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 중, 심리적 우려 해소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중
- ⑰ 사업 정상 추진을 전제로 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가능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창조산업과장】

□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14일~4.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고

○ 예고기간 중 총 399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4.22일에 통지하였습니다.

○ 이후 5.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4.9일~4.15까지 개최된 209회 임시회에는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 2. 다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경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기획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 그 간의 추진경과는 지난 3월 12일 경남도로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확정 통보되었고 3월 13일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3월 16일부터 각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2,558명이 신청하여 이중 1,017명을 1차 수혜대상자로 확정하여 4월 20일에 1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발송하였고
- 5월 7일에는 785명의 2차 수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2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5월 12일 발송하여 현재 까지 1,802명의 학생이 5월 19일 12시 기준으로 635건 71,908,76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러한 사업 경과 및 현황에 대한 사항을 지난 3월 24일 군의회 주례회의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다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추진의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빈부격차가 2위이며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민층과 부유층 월평균 교육비 격차가 8배나 차이가 나고
  - 2014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남의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한 가난과 부의 대물림으로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서민계층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의 교육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거창군 서민자녀교육지원 신청 12개 읍면별 접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각 읍면별 접수결과는 거창읍 1,787명, 주상면 48명, 웅양면 66명, 고제면 48명, 북상면 45명, 위천면 111명, 마리면 74명, 남상면 77명, 남하면 30명, 신원면 33명, 가조면 177명, 가북면 62명으로 총 2,558명 신청하였습니다.

5.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자 현황을 경남도에 제1호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남도의 사업추진일정 공문에 따르면 4월 10일까지 1차 수혜대상자를 확정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군은 추진일정에 맞추어 제출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6. 서민자녀의 기준과 도내 18개 시군 중 바우처카드 사업을 하는 곳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민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협의, 전문가 자문, 실제사례 검토 과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로

설정하였으며

-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 10개 전 군과 사천시와 밀양시 2곳의 시를 포함하여 12개의 시군에서 학생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창원, 양산, 진주, 김해, 통영, 거제시도 카드를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기존 사업과 중복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5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시달된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 따르면 '기존사업과 중복이 없음'로 통보되었으며

- 이외에도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청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 바우처 카드(서민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 소요예산 금액 12억)에 있어 거창군의 경우 대상 업체가 서점 두 곳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 여민동락 교육바우처카드 가맹점 중 관내 가맹점은 서점 2곳과 학습지 3곳 그리고 경남도립거창대학을 포함한 총 6곳이며
-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맹점과 도내 타시군 가맹점을 모두 합쳐 200여개의 가맹점이 있어 사용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8. 자기주도 학습캠프, 특기적성, 서민자녀학습캠프, 진로프로그램, 초청강사 특강비, 영어캠프는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데 대한 교육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단위로 학부모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하며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혜대상자가 아닌 자녀는 본인의 부담으로 교육에 참가를 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수혜대상자는 군에서 위탁업체로 참가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9. 마지막으로 1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서민 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서민자녀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자녀들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한 희망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 아울러, 도비 13억원의 지원으로 군내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시군의장협의회 결정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사업에 대해 군의회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평소 법조타운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그간 법조타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해 와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거창법조타운 조성 부지에 대한 입지 분석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악취민원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지역거점화, 낙후지역 개발 등 1석 4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 이에 따라 성산마을을 법조타운 사업대상지로 법무부에 추천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우리군의 추천 부지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결정하였고,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법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입지분석과 관련하여 사업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추진 과정에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한 기본조사용역 과정에서

○ 관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인

‘거창군관리계획(시설결정:공공청사(교정시설)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기초조사 등 입지 분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 관련 우리군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해당 부대의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 해당 부대의견은 우리군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치위·추진위 구성 및 찬성 성명 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1년 2월 민간주도로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가두서명운동, 이장단회의를 통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2014년 7월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법무부·국회 방문, 법조타운 조성 관련 안전대책 건의 등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조타운 추진 촉구 성명서의 경우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은 없으며,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내 교정시설 견학 관련하여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교정시설에 대한 심리적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하고 군민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교정시설 견학을 추진해 왔으며,
-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7백8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 그 외 관내 여러 단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활용하여, 견학 대상지 인근 교정시설을 견학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자회견이나 SNS 상의 주민 간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에서는 그간 법조타운 관련 고소·고발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 잘 알지 못하며
- 개인 간의 고소·고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0년 이후,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 출장 내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간 9차례에 걸쳐 법무부·대법원·국회 등 관계기관 공식 방문을 통해 지원·지청·보호관찰소 등 법조기관 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지원·지청은 지난해 관련 예산 2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지청의 경우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거창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련 예산 5억8천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전 부지 위치를 협의 중입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의 경우, 지난해까지 관계기관 3회 방문·협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으나, 법조타운 관련 갈등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 거창구치소 부지의 학교 및 도심 인접성과 높은 토지 보상가에 관한 사항 및 타 부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 분포는 타 교정시설 사례를 볼 때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 특히 서울 문정동 등 최근 법조타운 조성 사례에서 볼 때, 도심지 주거·상업지역 인근에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역설적으로, 이미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교가 들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교정시설은 결코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 보상비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군에서는 축사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위치선정 문제는 우리군의 권한사항이 아니며, 타 지역의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거창지원·지청과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국유지  
·국유림의 위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내 면적 132,000m<sup>2</sup>이상 국유지는 총 86필지로, 해당 재산은 산림청·조달청·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입니다.

□ 법무부의 구치소 부지 선정 관련 기준안이나 조건 및 이전부지 선정조건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지선정과 관련한 기준안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최초 입지 선정 과정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대상지로 적절한 지 검토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조타운 위치를 성산마을로 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이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최우선적인 이유이며
- 성산마을의 경우 거창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거지역으로써 이 지역의 보상비는 보상비와 슬레이트 철거비용 등 도합 400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아파트 건설업체 등에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재산성이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는 등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유일한 해결책은 국책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따라서 기존 국가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거창구치소 설치와 함께 지원·지청 이전을 묶어 법조타운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코자 한 것입니다.

- 특히 거창구치소 신축이 계기가 되어 노후화된 지원·지청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조타운 조성 사업추진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 서명부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유치 서명부와 관련하여 경찰·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 사안으로
-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반대 서명 동참 군민 수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언급하시는 서명 군민의 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항은 없어 우리군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이며
- 특정단체의 서명활동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발주 공고 일시 중단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업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전체 사업 추진 과정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사 발주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 이미 197억원의 보상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입찰공고 단계에 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대상지를 재검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부가 공사 일정에 맞춰 최대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법조타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반대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여론조사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지난번 지역언론사 조사 내용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 확실한 것은 법조타운 사업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군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직접 심판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구치소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군의 시정 및 이행노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교·전해철 국회의원의 발언의 경우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발언임에 따라 현재,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조치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추진 중인 사업으로,
- 그간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반대단체의 요구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 특히 관련 유언비어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 군민 홍보를 지속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더불어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심리적 우려와 불안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법조타운 진입도로와 외곽도로인 국도 3호선 직접 연결, 연고자 없는 출소자에 대해 버스터미널 까지 동행 후 탑승 확인, 법조타운 인근 치안센터 신설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갈등조정위원회 등 대책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11월 26일 군수님 담화내용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갈등해소위원회의 경우 사업 정상 추진을 전제로 한다면 언제든지 수용할 계획이며,
- 현재 반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이전 요구이며, 이는 현재로서는 우리군 권한 밖의 일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의미하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 정 질 문 답 변 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10:00 ~

● 질문의원 : 김향란 의원

● 질문내용

1. 작년 11월 17일 계고장도 없이 천막을 철거하면서 1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답 변 자 : 재무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

- 작년 11월 17일 계고장도 없이 천막을 철거하면서 100여명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은?

## □ 답변요지

- ① 해당부지는 청사부지와 문화휴식공간으로 구성된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는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음
- ② 11월 17일은 대형트리 설치, 크레인 및 전기작업 예정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 ③ 이동설치중인 천막의 재설치를 막는과정, 청사진입시도와 차단과정에서 쌍방간의 경미한 부상이 일부 확인되고 있음
- ④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설치가 완성된 이후에는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음
- 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자체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막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이 설치된 장소는 행정재산으로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는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1월 17일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준비를 위해 대형트리 설치와 크레인 및 전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전날인 16일에 무단으로 설치한 천막을 옆으로 이동하던 중 재설치를 막기 위해 범대위 측과 공무원 쌍방간에 충돌이 있었고,
- 이후 청사진입 시도와 차단 과정에서도 타박상과 찰과상, 멍 등 경미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재산관리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천막 설치가 완성되고 고착 시설이 완비된 이후인 17일을 기점으로 9차례의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 국민인권위원회 진정, 사법기관 수사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고 존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군정질문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05. 21(목)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
  1.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3호선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2.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단절된 도로이며 노선이 기형적인데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자 : 도시건축과장

# 군 정 질 문 답 변 요 지

## □ 질문요지(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

1.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3호선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2.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단절된 도로이며 노선이 기형적인데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 □ 답변요지

### 1.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3호선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 ① 거열산성진입도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거 1992년 군계획시설 중로 1-16호선으로 시설결정 된 군 계획도로
- ② 국도3호선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 남해 ~ 초산간 연결 광역교통망의 국가도로로서 우리군 구간은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 시설 상호간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도로

### 2.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단절된 도로이며 노선이 기형적인데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거 특정지역으로 2008년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수립시 북부우회도로개념으로 1992년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로 1-16호선의 계획도로 노선을 거열산성진입 개념의 도로로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사업
- ② 거열산성진입도로와 소로 1-49호선 청송식물원~거열빌라 구간의 미 개설된 300m와 주변계획도로개설 도로상호간 연결 순환시키는 교통망을 구축 개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림리의 새로운 시가지화가 조성 될 것으로 확신
- ③ 거열산성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주변계획도로 중로2-23호선과 소로 2-111호선의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미 개발된 주변 주거지역등의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군민모두가 크게 기대
- ④ 또한 덕유산 요양병원앞 구 국도3호선과 연결교량을 이번 군관리 계획에 반영 시설을 결정하고 앞으로 이용추이를 보아 가면서 교량 설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 먼저 우리군 도시발전과 거열산성진입도로개설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거열산성진입도로와 국도3호선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거열산성진입도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1992년 군계획시설 중로 1-16호선으로 시설결정 된 군 계획도로입니다

- 국도3호선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에 의해 결정된 남해 ~ 초산간 연결 광역교통망의 국가도로로서 우리군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설 상호간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도로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단절된 도로이며 노선이 기형적인데 설계를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에 의거 특정지역으로 2008년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수립시 북부

우회도로개념으로 1992년 결정된 군계획시설 중로 1-16호선의 계획도로 노선을 거열산성진입개념의 도로로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거열산성진입도로와 소로 1-49호선 청송식물원~거열빌라 구간의 미 개설된 300m와 주변계획도로개설 도로 상호간 연결 순환시키는 교통망을 구축 개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림리의 새로운 시가지화가 조성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거열산성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주변계획도로 중로2-23호선과 소로 2-111호선의 군계획도로를 개설 함으로써 미 개발된 주변 주거지역등의 개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군민모두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덕유산 요양병원앞 구 국도3호선과 연결교량을 이번 군관리계획에 반영 시설을 결정하고 앞으로 이용추이를 보아 가면서 교량설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김향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열산성 진입로 개설사업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정 질문 답변서

- 질문일시 : 2015. 5. 21(목)
- 질문의원 : 김향란의원
- 질문내용
  1. 전국 최초 무상급식 추진과정과 거창군이 갖는 의미는?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군 현황은?
  3. 경상남도의회 증재안에 대한 입장은?

**답변자 : 마을만들기과장**

# 군정질문 답변요지

## □ 질문요지

1. 전국 최초 무상급식 추진과정과 거창군이 갖는 의미는?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군 현황은?
3. 경상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 □ 답변요지

1. 전국 최초 무상급식 추진과정과 거창군이 갖는 의미는?

### ○ 추진과정

- 우리군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 2004. 10. 1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무상급식 추진
  - ▷ 2007년 : 면단위 초·중학교 무상급식
  - ▷ 2008년 : 관내 초등학교와 면 단위 중·고 무상급식
  - ▷ 2009년 : 관내 전 초·중 및 면단위 고등학교 무상급식
  - ▷ 2010년 :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 ▷ '11~14년 : 경상남도·교육청·거창군 매칭사업으로 무상급식

### ○ 무상급식 관련 전국 최초시행 거창군의 의미

- 전국 최초 무상급식 조례제정과 제도적 기틀 마련
-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군민중심 행정추진
- 지역농산물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남부내륙의 교육도시 위상 제고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군 현황은?

- 입법예고 : 김해시, 양산시 등 2개 시
- 개정논의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등 6개 시군

3. 경상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 현재 경남교육청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은 18% 정도이며 중재안대로 한다면 수혜학생은 64.5% 정도 예상 함
- 무상급식지원이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는 것보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함
- 중재안 결정은 경상남도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 임

# 군 정 질 문 답 변 내 용

[답변 :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과 소관 세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 학교 무상급식의 시작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 지역 농산물 소비,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 지난 2004년 10월 13일 전국 최초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2007년부터 군비 5억원으로 면단위 초, 중학생 1,2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는 군비 7억 8천만원과 교육청예산 15억 4천만원 등 23억 2천만원으로 초등학생 전체와 면단위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4,30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습니다.
  - 2009년부터는 도비 1억원, 군비 17억원, 교육청 10억원 등 28억원으로 읍단위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체 초, 중, 고등학생 6,8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 2010년부터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지난 해 까지 추진해 왔지만

○ 금년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 다음, 무상급식관련 전국 최초시행 거창군의 의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제정과 함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것은 군민중심의 행정추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 급식센터 운영과 로컬푸드를 연계한 맞춤형 마을기업 조성 등을 통해서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시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5.18. 현재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시군은 양산시와 김해시가 5월 2일, 5월 8일 각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입니다.

□ 끝으로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우리군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남도의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의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적 무상급식 안입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현재 우리 군 수혜 학생은 18% 정도인데 중재안대로 한다면 수혜 학생이 6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따라서 현재 무상급식이 중단된 상황이 이어지는 것 보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이번 중재안의 결정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